

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3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4월 30일  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조례개정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,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수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,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
-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 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

### **3. 참고사항 : 생략**

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을 “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,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을 개정안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,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,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